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8/

발의연월일 : 2008. 3. 3.
발 의 자 : 이석원 의원 외 7인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지역농업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군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제4조)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친환경연구회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사업자

다. 농업환경개선 시책 추진(안 제7조)

라.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심의

마.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 위원장(부군수) 포함 15인 이내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3조 및 제16조

나. 입법예고 : -

다. 제정조례안 : 별첨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3.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사업
6.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그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 (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명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그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6.9.27>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개정 2001.1.26>)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②친환경농산물의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석원 의원 외 7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원명	서 명	날 인
이 석 원		
정 종 태		
김 기 석		
김 순 호		
채 명 지		
방 종 영		
서 정 우		
정 명 자		